## 행 정 안 전 부 주의요구

제 목 「직제 규정」상의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

기 관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

내 용

## 1. 업무개요

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(이하 "사업회"라 한다)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승진인사 계획을 수립하여 2급에서 1급으로 1명, 3급에서 2급으로 6명, 4급에서 3급으로 7명, 5급에서 4급으로 7명 등 4년 동안 총 21명을 승진시켰다.

## 2. 판단기준(관계법령 등)

「공공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지침」제3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조직과 정원을 운영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야 한다 고 되어 있다.

사업회 「직제 규정」제12조 [별표 2]는 직급별 정원을 정하고 있고 사업회「인사 관리 규칙」제19조에 따르면 승진임용은 정원 대비 직급별 결원이 생겼을 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행한다고 되어 있다.

또한 사업회 「임금피크제 운영 지침」제3조 및 제4조에 따르면 임금피크 제는 만 58세 이상인 모든 직원에게 적용하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정년 도래 1년 전에 별도정원으로 분리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다.